#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64

발의연월일: 2024. 9. 12.

발 의 자:한병도·정태호·임오경

윤준병 • 신정훈 • 임호선

정동영 · 진선미 · 박 정

장철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혼인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처음으로 20만건 이하로 집계되었고, 2022년에는 19만 1,690건을 기록하였음.

이와 같은 혼인율의 하락은 저출생 추세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므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이 되는 혼인건수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세제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혼인장려금을 지급하고, 신혼부부가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3제6항 중 "이 절과 제10절의4"를 "이 절, 제10절의4 및 제104조의34"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4(혼인장려금)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혼인한 날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에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혼인장려금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0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혼인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② 혼인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혼인장려금신청서에 혼인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자의 의사에 의하여 제2항에 따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혼인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④ 혼인장려금의 신청자격, 혼인장려금의 신청·환급 및 환급의 제한·경정 등과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조회, 자료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2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40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2. 제2항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혼인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혼인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 격) ① ~ ⑤ (생 략) 격)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 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 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반기 신청"이 제10절의4 및 제104조의34----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 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 른다. \_\_\_\_\_\_\_ ⑦ (생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4조의34(혼인장려금) ① 소득 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 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인 경우 혼인한 날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에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혼인장려금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 00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혼인장려금을 신청할수 없다.

- ② 혼인장려금을 받으려는 거 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혼 인장려금신청서에 혼인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자 의 의사에 의하여 제2항에 따 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혼 인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 다.
- ④ 혼인장려금의 신청자격, 혼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 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⑩ (생 략) <신 설> 인장려금의 신청·환급 및 환급의 제한·경정 등과 신청자등에 대한 확인·조사,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자료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 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⑩ (현행과 같음)

①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 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40 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 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본 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 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 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 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 가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

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제2항제7호의 금액(연간 100 만원을 한도로 한다)